

< 협약의 세부조건 >

※ 아래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현행 아날로그 기반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SaaS형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연구개발과제번호: S3309041)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의무, 전문기관의 권한·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 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기타 부속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혁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은 첨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 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총괄
2.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4.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6. 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8.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9.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성과활용보고서 및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작성·제출 총괄
10.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
11.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3.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4. 연구개발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5.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6.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17.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8.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보고
19.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2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출
21. 그 밖에 촉진법 또는 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촉진법 또는 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촉진법 또는 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6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4. 그 밖에 요령에서 정한 사항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1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와 요령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1조제4항,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와 요령 제16조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와 요령 제21조·제22조·제23조·제27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2조제2항·제14조·제15조, 혁신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와 요령 제22조·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2조제3항·제15조,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와 요령 제22조·제24조·제24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계	1차 지급	2차 지급	3차 지급	4차 지급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식회사 마엣	55500	55500			
1단계	2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식회사 마엣	55500	55500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기한			
				현금	현물	계	1차 부담	2차 부담	3차 부담	4차 부담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식회사 마엣	650	5600	6250	20220930			

1단계	2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식회사 마엣	650	5600	6250	20230331			
-----	------	----------	---------	-----	------	------	----------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3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혁신법 제13조 또는 혁신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6조,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및 요령 제26조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6조제4항, 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및 요령 제26조제4항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7조,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요령 제27조에 따른다.

제16조(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①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감면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8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기술료 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 중 매출액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구분	업체명	매출액 발생1년차	매출액 발생2년차	매출액 발생3년차	매출액 발생4년차	매출액 발생5년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식회사 마엣	1.2	2.1	2.5	3	4

제17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9조·제20조, 혁신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와 혁신법 제19조·제20조 또는 혁신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21조, 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와 요령 제45조에 따른다.

제21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혁신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와 혁신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혁신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요령 제29조부터 제29조의2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23조(연구노트 작성·관리)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35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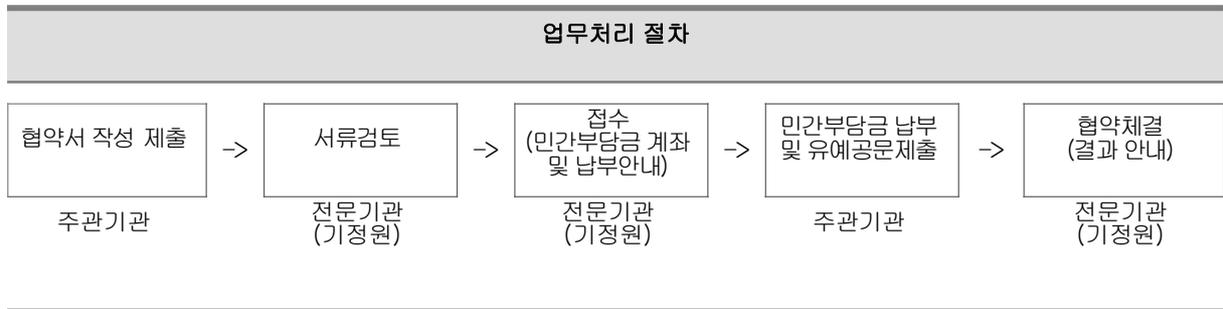
제24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5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혁신법·혁신법 시행령·혁신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시행규칙, 촉진법·촉진법 시행령·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의 해석에 따른다.

③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서면(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서 협약 변경을 갈음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 내용으로 인정된다. 전자문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발송하며, 우편물 수신이 가능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별첨> 1.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신청시의 첨부서류는 제외)
-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해당시 제출)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해당시 제출)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제출)
2.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3.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7.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사업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9.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 서류(해당시 제출)
10. 학생연구원 기술료보상금 지급기준(해당시 제출)
11.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해당시 제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하여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smtech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부담금 납부 및 납부유예공문 미제출 시 협약체결의 중지 사유가 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